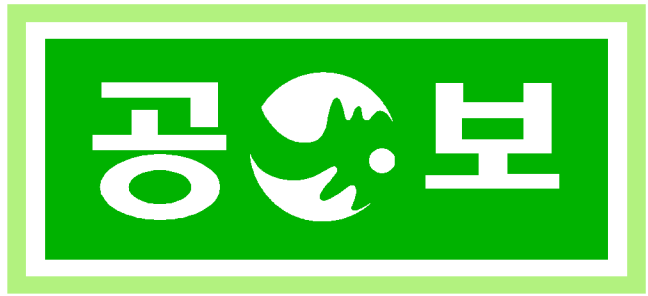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구 관	기 관 의 장

제 1009 호 2016. 5. 26. (목)

규 칙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4호[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] 2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85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86호[2016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88호[도로명주소 고시] 7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89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9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☎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 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
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박천동



2016년 5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74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
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
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
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
전검사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
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7호를 각
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
- 9.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
및 시설

제3조 중 “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를
“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(시행일 2015. 7. 29.)반영
 - 법 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- 지역(강동권, 명춘지구, 송정지구 등) 개발로 인해 숙박시설 등 대형 건축물의 신축 허가신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검사 대상시설 범위 확대

2. 주요내용

- 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개정(제2조)
 -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
 -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
 - ▷ 8.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
 - ▷ 9.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시설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 -85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매곡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 : 이웃사랑운동본부 본부장 추대성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30-8(한영빌) 102호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토지의 점용(청소년 가장 돕기 음악회)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치 : 신천동 745-118번지
나. 면적 : 120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2016.05.29. ~ 2016.05.29.(1일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6-86 호

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은 2016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5. 26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의회 의결일자 : 2016. 5. 24.

2016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정액		비교증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267,482,216	100.00%	246,550,411	100.00%	20,931,805	8.49%
일반회계	263,652,483	98.57%	245,233,114	99.47%	18,419,369	7.51%
특별회계	3,829,733	1.43%	1,317,297	0.53%	2,512,436	190.73%
기타특별회계	3,829,733	1.43%	1,317,297	0.53%	2,512,436	190.73%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278,212	0.10%	145,432	0.06%	132,780	91.30%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42,390	0.02%	38,800	0.02%	3,590	9.25%
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	1,244,313	0.47%	0	0.00%	1,244,313	순증
기반시설특별회계	10,483	0.00%	10,483	0.00%	0	0.00%
주차장특별회계	2,254,335	0.84%	1,122,582	0.46%	1,131,753	100.82%

□ 일반회계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장·관	예산액	구성비	기정액	구성비	비교증감	증감률
총 계	263,652,483	100.00 %	245,233,114	100.00 %	18,419,369	7.51%
100 지방세수입	53,370,000	20.24 %	53,370,000	21.76 %	0	0.00%
110 지방세	53,370,000	20.24 %	53,370,000	21.76 %	0	0.00%
200 세외수입	19,354,297	7.34 %	17,384,949	7.09 %	1,969,348	11.33%
210 경상적세외수입	15,651,030	5.94 %	15,688,349	6.40 %	△37,319	△0.24%
220 임시적세외수입	3,703,267	1.40 %	1,696,600	0.69 %	2,006,667	118.28%
300 지방교부세	5,277,263	2.00 %	3,221,000	1.31 %	2,056,263	63.84%
310 지방교부세	5,277,263	2.00 %	3,221,000	1.31 %	2,056,263	63.84%
400 조정교부금등	46,625,120	17.68 %	38,190,607	15.57 %	8,434,513	22.09%
410 차지구조정교부금등	46,625,120	17.68 %	38,190,607	15.57 %	8,434,513	22.09%
500 보조금	124,861,920	47.36 %	121,445,710	49.52 %	3,416,210	2.81%
510 국고보조금등	79,193,520	30.04 %	77,154,786	31.46 %	2,038,734	2.64%
520 시·도비보조금등	45,668,400	17.32 %	44,290,924	18.06 %	1,377,476	3.11%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4,163,883	5.37 %	11,620,848	4.74 %	2,543,035	21.88%
710 보전수입등	13,696,826	5.20 %	11,200,000	4.57 %	2,496,826	22.29%
720 내부거래	467,057	0.18 %	420,848	0.17 %	46,209	10.98%

□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	기정액		비교증감	증감률
		구성비		구성비		
총 계	263,652,483	100.00 %	245,233,114	100.00 %	18,419,369	7.51 %
010 일반공공행정	16,082,096	6.10 %	15,672,648	6.39 %	409,448	2.61 %
020 공공질서및안전	1,738,531	0.66 %	1,666,204	0.68 %	72,327	4.34 %
050 교육	629,070	0.24 %	600,570	0.24 %	28,500	4.75 %
060 문화및관광	20,272,708	7.69 %	15,992,864	6.52 %	4,279,844	26.76 %
070 환경보호	8,885,821	3.37 %	8,271,470	3.37 %	614,351	7.43 %
080 사회복지	115,969,598	43.99 %	109,372,093	44.60 %	6,597,505	6.03 %
090 보건	8,198,399	3.11 %	7,611,761	3.10 %	586,638	7.71 %
100 농림해양수산	17,220,779	6.53 %	15,928,476	6.50 %	1,292,303	8.11 %
110 산업·중소기업	1,191,743	0.45 %	947,637	0.39 %	244,106	25.76 %
120 수송및교통	10,826,932	4.11 %	7,848,233	3.20 %	2,978,699	37.95 %
140 국토및지역개발	14,752,379	5.60 %	13,462,478	5.49 %	1,289,901	9.58 %
160 예비비	3,313,005	1.26 %	3,230,969	1.32 %	82,036	2.54 %
900 기타	44,571,422	16.91 %	44,627,711	18.20 %	△56,289	△0.13 %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88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52(산하동) 외 1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5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해지구 818 5L6L	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52(산해동)	2016-05-26	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영촌지구 58-18 6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3(진장동)	2016-05-26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내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 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1-10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동영로 2(호계동)	2016-05-26	동대산 인근동영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9-17	
4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6-18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20(양정동)	2016-05-26	예로부터 양정동은 양정, 양동, 지천마을로 각각 나뉘어 불리왔었던 곳으로 지역의 특성 을 반영하고 거정동이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5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해지구 669 4L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면로 1669(산해동)	2016-05-26	이 지역의 지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6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해지구 699 5L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해5로 26-17(산해동)	2016-05-26	강동산해지구를 지나는 도로라는 의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4-05-07	
7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74-3	울산광역시 북구 음발길 77-2(천곡동)	2016-05-26	기존 자연마을인 음발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8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45-1	울산광역시 북구 분동길 33-11(천곡동)	2016-05-26	기존 지명인 분동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9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245-15	울산광역시 북구 분동길 33-13(천곡동)	2016-05-26	기존 지명인 분동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0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5-1	울산광역시 북구 지천1길 42(양정동)	2016-05-26	북쪽과 서해저방의 상산들이 신단을 지어 양곡과 소금을 매대하던 곳으로 이때부터 지 천이라 불리었고 북은곳에 있는 나리마을이라는 뜻으로 옛 지명을 그대로 살려 도로명 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11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해지구 338 5L	울산광역시 북구 산용사길 27(산해동)	2016-05-26	산용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12	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229-9	울산광역시 북구 차원3길 117-13(창평동)	2016-05-26	기존 차원마을인 차원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89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2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3(진장동)외 2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05. 26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증원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3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58-1B 6L	2016-05-26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5길 20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56-18	2016-05-26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치전1길 42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5-1	2016-05-26	건축물 멸실	